

#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8
------	-----

제출연월일 : 2006. 3. 20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 유아(유치원생)에 대한 입장료 징수규정을 정하고 입장료 납입기일 변경 등으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현행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 삭제 (안 제1조)
- 나. 유아 입장료 징수 (안 제4조)
- 다. 입장료 납입 기일 변경(안 제6조)
- 라. 입장권 및 주차권 서식 변경(안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마. 컨벤션홀 사용 신청서 및 사용권 서식 신설(안 제7조, 별지 제2호 및 3호서식)
- 바. 행위의 제한 내용 신설(안 제13조)

## 4.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 2006-57호(2006. 1. 24~ 2. 13)  
⇒ 의견제출사항 없음
- 나. 관련법령 및 근거 : 관광진흥법 제 64조(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

## 5. 본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및 시설관람료”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을 “3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납입하여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하며,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컨벤션홀 사용시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6세이하”를 “2세 이하”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행위제한) ①관람자는 관광지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과 술을 반입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

(다만,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는 제외)

3.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에 승차하고 입장하는 행위
4. 앰프·악기 등의 사용으로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5.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를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시설이용료(7조와 관련)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주 차 료	이 룰 차	400	
	승 용 차	1,500	
	버 스	3,000	
	화 물 차	3,000	
컨벤션홀	1회	50,000	4시간기준
	1일	100,000	8시간기준

[별지 제1호서식]

<p>고성군 당항포관광지</p> <p style="text-align: center;"><b>입 장 권</b></p> <p style="text-align: center;">입장료 내역 주차료 내역 합 계:        원</p> <p>일련번호</p>	<p style="text-align: center;"><b>입 장 권</b></p> <p style="text-align: center;">입장료 내역 주차료 내역 합 계 :        원 일련번호 (회 수 용)</p>
--	--

[별지 제2호서식]

## 컨벤션홀 사용 신청서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시간)	
사용자 인원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광지관리사업소장귀하		

### 컨벤션홀 사용권(원부)

■ 금 액 :

■ 내 용

- 사용일시 :
- 신청자 :
- 대여목적 :

상기와 같이 영수함

200 년 월 일

관광지관리사업소장

### 컨벤션홀 사용권(영수증)

■ 금 액 :

■ 내 용

- 사용일시 :
- 신청자 :
- 대여목적 :

상기와 같이 영수함

200 년 월 일

관광지관리사업소장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u>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항포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의 보호 관리와 <u>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및 시설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어린이 : <u>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u>            5~6. (생 략)</p> <p>제6조(입장료징수등) ①~③ (생 략)            ④당일 징수한 입장료를 익일 12시까지 <u>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u></p> <p>⑤ (생 략)</p> <p>제7조(시설이용료) ①~② (생 략)            ③주차권의 서식은 <u>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u>            ④야영장 이용권의 서식은 <u>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u></p> <p>⑤ (생 략)</p> <p>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6세이하인 어린이와 65세이상인 자            5 ~ 7. (생 략)            ② ~ ③ (생 략)</p>	<p>제명 : <u>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            ----- 「<u>관광진흥법</u>」            -----<u>입장료 및 시설이용료</u>-----            -----</p> <p>제4조(용어의 정리) -----            -----            1~3. (현행과 같음)            4. --- : <u>3세 이상</u> -----            -----            5~6. (현행과 같음)</p> <p>제6조(입장료징수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u>납입하여야 하며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2시까지 군금고에 납입하도록 한다.</u>            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설이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별지 제1호서식에 포함한다.</u>            ④<u>컨벤션을 사용시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u>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u>2세 이하</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3조(행위제한) ①관람자는 관광지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li> <li>2. 취사 또는 조리를 요하는 음식물과 술을 반입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다만, 도시락류 등의 간단한 음식물을 먹는 행위는 제외)</li> <li>3.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에 승차하고 입장하는 행위</li> <li>4. 앰프·악기 등의 사용으로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li> <li>5.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li> </ol> <p>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